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경숙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1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이경숙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동욱, 김성준, 김영옥,
김영철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
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
이봉준, 이상욱, 이승복,
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
임규호, 최민규, 최윤희,
최진혁, 홍국표, 황유정,
황철규 의원(40명)

1. 제안이유

-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사고가 발생해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, 2023년 6월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고 구간 방음터널 상판에 올라간 여중생이 잇따라 언론 보도되면서 방음터널의 유지·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.
- 서울시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보다 적극적인 방음터널 유지·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짐.
- 이에 따라 방음터널 시설물 관리자에게 유지·관리 의무를 부여하고,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방음터널 용어 정의(안 제3조제19호 신설)

나. 방음터널 시설물 유지·관리 의무 부여 및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(안 제16조의3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“방음터널”이란 교통소음을 흡음 또는 차단하여 도로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형상이 터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방음시설을 말한다.

제2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방음터널의 유지·관리) ① 관리자는 방음터널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방음터널의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,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